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10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8. 11. 28(수) 19:0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10회 정기이사회

- 일 시 : 2018년 11월 28(수) 19:00
- 장 소 : 서리원
- 재적이사 : 11명
- 출석이사 : 8명
- 출석감사 : 1명

이사장이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회를 선언한다.

사무국장이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성원을 보고한다.

이사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 보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한다.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한다.

제176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76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한다. 사무국장이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이 이사회 구성 시 적절한 성비(性比)를 유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정관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3항을 신설하고,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에 의거 재단 정원을 정관 제36조(사무국의 조직 등)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互先)으로 선임되는바,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오며, 이에 따라 이사장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한 조문으로 재정비 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한다.

○○○ 이사가 정관개정사항은 감독청 허가사항으로 감독청과 협의가 되었는지 묻다.

사무국장은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한 결과, 제19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제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2항을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정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한다.

○○○ 이사가 임원의 임기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효력시기)을 두어 현행 이사들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말한다.

○○○ 이사가 회의 진행 중에 경과규정을 만들어 수정 의결 하자는 의견을 말한다.

사무국장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개정 후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부터 적용한다.』라고 경과규정에 대한 (안)을 보고하다.

○○○ 이사가 부칙 신설(안)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 진행 하되, 자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장 및 이사2인이 참여한 소위를 통해 수정내용을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다.

이사장이 제176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부칙 추가 사항에 대해 교육청과의 의견조정을 통해 이사 두 분(소위원회)에 자구 수정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선포하다.

제177호 임원 선임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77호 임원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7분의 임원이 2019년 1월 7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임기 만료 임원은 ○○○ 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감사라고 말하다. 최종 연임의사를 밝힌 이사는 ○○○ 이사, ○○○ 이사, ○○○ 이사, ○○○ 감사라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 이사, ○○○ 이사, ○○○ 이사, ○○○ 감사의 연임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바, 참석이사 전원이 연임에 동의하고 연임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정관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78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78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6급 직원들의 임금수준 개선과, 연봉한계액표를 현실화 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제7조 제2항 『<별표1>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인상률의 50%로 조정한다.』를 신설하고, 초과근무 시간 개선과, 이를 통한 직원 임금수준 개선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다만,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4급 상한액은 현행(53,600천원)으로 유지하는 의견을 주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말하다.

○○○ 이사가 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이사도 수정의결에 동의한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8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여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79호 2019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심의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79호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현재 서울

시의 2019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2018년 사업이 진행 중 이지만 재단의 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서울시 교육청과 시율시에 제출해야 하므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최종 확정된 서울시 예산을 반영한 2019년 사업계획은 2018년 결산과 함께 내년 2월 이사회 때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사무국장이 경영부분 및 사업부분 사업계획에 대하여 준비된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사무국장이 총괄 예산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다.

이사장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9호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18년 11월 28일